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2015년 8월 2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25일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과장 윤종구(043-870-5540), 박재훈 팀장(5541)

한-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본격 논의 - 제12차 한-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개최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(CNCA)와 양국 간 전기전자분야 인증관련 상호인정* 체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.

*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, 수출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의미

- 양국은 8.24(월)-25(화), 경주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「한-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*」를 개최하고, 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(IECEE CB**)를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
* 양국 간 기술규제 문제 해소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'04년부터 매년 개최

** 전기전자국제표준화기구인 IEC에서 운영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시험인증 국제상호인정 체계

-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(CCC*)의 획득이 필요하나,

*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: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 제품, 자동차 부품 등 20종 158개 품목이 해당

-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IECEE CB성적서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, 중국에서 다시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.

- 이에,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원활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, 표준관련 비교연구, 상대국의 IECEE CB 성적서의 적극적 수용 및 양국 시험 인증기관 간의 협력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.
- 또한,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양국의 강제인증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,
 - 향후 정보교환 및 상호인정 범위 결정 ⇒ 인증제도 차이분석 ⇒ 상호인정 방법과 범위 협상 ⇒ 협정문 준비 및 서명 등의 순으로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- * 국표원은 전기전자 및 생활용품 분야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고, CNCA는 자동차 등 공산품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여, 향후 국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 필요
- 아울러, 양국 인증제도 개편현황을 공유하고, 한·중 FTA TBT(무역 기술장벽) 협력의 원활한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였고,
 - 특히 한국은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과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관련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여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.
- 우리측 수석대표인 변영만 기술규제대응국장은 “금번 회의에서 양측이 협의한 양국 강제인증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중국측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며,
 - 향후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협력이 진전될 경우, 우리 기업의 對중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윤종구 과장(☎043-870-5540), 박재훈 팀장(☎043-870-55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제12차 한-중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요

□ **일자/장소** : 2015. 8.24.(월)~8.25.(화) / 경주 힐튼호텔

□ **참석자**

○ (한) 국표원 변영만 기술규제대응국장, 국내 시험인증기관 대표자 등 16명

○ (중) CNCA 류웨이쥔(劉衛軍) 부원장, 중국 시험인증기관 대표자 등 9명

□ **주요 일정**

일자	시간		내용	비고
8.24 (월)	09:00~09:20	20'	(오프닝세션) 1) 환영 및 소개 2) 인사말 3) 제11차 회의록 보고	양국 수석대표 및 무역기술장벽협상과
	09:20~10:40	80'	(세션1) 양국 인증제도 개편 현황 소개 1) 한국: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2) 전기용품안전관리 현황 3) 중국: '심화개혁' 추진 현황	기술규제정책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CNCA
	10:40~11:00	20'	Coffee Break	
	11:00~12:20	80'	(세션2) 한-중 FTA TBT 협력원활화	무역기술장벽협상과 국토부, 기술규제정책과 CNCA
	12:30~14:00	90'	오찬	
	14:00~15:30	90'	(세션3) 한-중 상호인정 논의(인증기관 포함)	우리측 시험연구기관 중국측 시험연구기관
	15:30~15:50	20'	Coffee Break	
	15:50~17:00	80'	(세션4) 한-중 상호인정 정부 부처간 논의	무역기술장벽협상과 중국측 CNCA
	17:00~17:30	30'	(세션5) 공통관심 사항	양국 수석대표 및 무역기술장벽협상과
	18:00~20:00	120'	만찬	
8.25 (화)	09:00~11:00	120'	상호인정 추진 방안 논의	양국 수석대표
	14:30~17:30	180'	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방문	

참고 2

한-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현황

□ 양국 전기전자분야 강제인증제도 비교

구분	KC인증 (한국)	CCC 인증(중국)
인증관리 방식	제품 유해도에 따라 3가지 유형	모든 품목
① 제품시험	- 안전인증제도 : ①+②+③	①+②+③
② 공장심사	- 안전확인제도 : ① (지정시험기관)	
③ 정기검사	- 공급자적합성제도 : ① (시험기관 선택 자유)	
안전관리 품목수	177 품목 (인증 46, 확인 69, 공급자 62)	105 품목 (CCC인증)

□ 우리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

-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(CCC*)의 획득이 필요하나,
-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IECEE CB성적서가 CCC 인증 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, 중국에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함
⇒ 중국에 제품 샘플 송부 등 시험인증관련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소요

□ 한-중 전기전자제품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방향

- 양국의 시험인정체계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(IECEE CB)체계를 활용, 시험인증기관 간 MoU에 의한 상호인정 중심으로 추진
- * 시험인증기관 간 MoU에 의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방법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미국, EU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에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임
- 양국 시험인증기관들이 상호인정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양국 정부간 합의 추진

참고 3

중국 인감위(CNCA) 및 CCC인증 개요

□ 중국 국가 인증인정 감독관리 위원회(CNCA*)

*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's Republic China

○ 조직 :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(AQSIQ*, 장관급) 소속의 차관급 기관

*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,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RC

○ 주요 역할

- 전국 인증허가 업무의 통합 관리 감독 및 조정
- 강제 상품인증제도의 정책수립 및 행정관리
- 인증임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, 시험·검사기관 등의 지정
- 산하기관으로 중국품질인증센터(CQC) 운영

□ CCC 인증 (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)

○ 중국 강제인증제도로 중국 내 생산·유통 및 수입품에 대하여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내 판매 가능

○ 강제인증대상 : 20종 158개 품목

* 가정용 전기용품, 차량 및 안전제품, 정보기술장비, 전동공구, 용접기, 음향 영상 설비, 전선케이블 등

○ 인증기관 : 중국품질인증센터(CQC)에서 사실상 대부분 인증 수행하고, CQC에서 지정한 시험기관(152개)에서 시험 실시

※ CCC 인증 절차 (처리기한 90일)

- ▶ (인증신청) 인증기관 신청서 제출 (국내에는 중국이 지정한 CCIC Korea가 독점)
- ▶ (형식시험) 중국 시험소에서 실시하므로 중국으로 샘플 송부
- ▶ (공장심사) 품질시스템, 신청제품과의 일치성 확인
- ▶ (인증서 발행) 보고서 검토 후 인증서 발행, 마크 부착
- ▶ (정기공장심사) 인증 취득 후,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
- ▶ (인증서 갱신)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, 만료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 필요